

#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0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4월 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절차 및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장례지원 대상자(안 제2조)
- 다. 장례식의 종류(안 제3조)
- 라.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마. 장례비용 및 수당 등(안 제6조, 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소방공무원법, 소방기본법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#### 다. 합 의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·강화규제 없음
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: 해당사항 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협의 완료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대상 아님

#### 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 (2016. 2. 19. ~ 3. 9.) 결과: 별첨
- (2) 비용추계서: 별첨

##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례지원 대상자)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「소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사망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순직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.

제3조(장례식)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서울시장
2. 소방관서장
3. 가족장

②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종합방재센터장, 서울소방학교장
2. 각 소방서장, 119특수구조단장
3. 청와대소방대장

③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

④ 제1항 각 호 중 서울시장은 시장, 소방관서장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. 다만,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시장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장례위원회) ①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산하 또는 소방관서에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·내용에 따라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, 장례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③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집행위원회) ①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2항에서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장례비용) 시장은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순직소방공무원의 장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도시안전건설 전문위원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안 제2조(장례지원 대상자)</b> 장례지원 대상자에 소방공무원이 아닌 의무소방원, 사회복지무원, 의용소방대원이 포함되어 있어 소방공무원장례지원이라는 조례의 취지를 벗어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 제2조 장례지원 대상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한정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안 제4조(장례위원회의 설치)</b> 장례위원회의 설치권자를 장례식의 주관자에서 시장으로 변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례위원회 설치권자를 장례식의 주관자에서 시장으로 변경</li> </ul> </li> </ul>

#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: 「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제6조 장례비용 지원에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.

2. 비용추계의 전제: 향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비용 지원

3. 비용추계결과: 장례지원 비용 53백만원(1인당) 정도

○ 최근 10년간 순직자 발생현황(서울시)

(단위: 건)

연도별	계	현 장 활 동			소 방 훈 련		기타
		화재	구조	구급			
계	7	5	2	0	0	0	0
2010년	2		2				
2008년	3	3					
2006년	2	2					

○ 최근 4년간 순직소방공무원 장의식 비용(전국)

(단위: 천원)

구분	송탄(2011.12)	남양주(2012.9)	인천(2012.11)	평택(2015.12)	평균
총비용	44,019	40,484	46,065	82,639	53,301
장례식	16,826	14,630	10,420	7,360	12,309
영결식	14,729	14,785	18,118	46,104	23,434
기타	12,464	11,069	17,527	29,175	17,558

4. 덧붙이는 의견: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는 없으며, 전국평균

장례식비용 평균 53백만원으로 시 재정부담 미약으로 사료됨

5. 작성자: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강대문(3706-1651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○ 총 계: 53,464,450원(2015.12. 서해대교 순직사고 장례·영결식 비용)

- 장례식비용: 7,360,000원

▪ 빈소임대료: 6,400,000원

▪ 안치료: 233,000원,

▪ 청소수거료: 80,000원

▪ 영전사진: 60,000원

▪ 입관실사용료: 587,000원

- 영결식비용: 46,104,450원